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71

제출년월일 : 2010.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가.「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제명 및 새주소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협의대상 도로의 현황 제공에 대한 내용 및 2개 이상의 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이 「도로명주소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명시되어 삭제 함 (안 제2조, 안 제3조)

다. 도로명의 사용의무 적용시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으로 변경함(안 제4조)

라. 인천광역시새주소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도록 규정 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실·국(군·구)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9쪽)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10쪽~16쪽).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도로명주소법」”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제목 중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도로명”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도로명사업에 의하여”를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 중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시민”을 “시민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판 설치 등 새주

소 안내시설” 을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25조제5항”을 “법 제22조의2제1항”으로, “인천광역시새주소”를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중 “도로명사업”을 각각 “도로명주소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임”을 “1차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제13조 중 “토지정보과장”을 “도로명주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새주소업무”를 “도로명주소업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로명주소법」 ---------- ---------- ---------- --
제2조(협의대상 도로의 현황 제공) ①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과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2개 이상의 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현황(명칭, 구간, 너비, 설치자, 관리자, 관련 군·구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②시장은 제1항의 도로 현황에 관한 자료를 매년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작성 기준연도의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도로의 현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이 연도 중에 확정 또는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항 중 해당 군수·구청장 사이에 동일	

현 행	개 정 안
한 도로명을 부여하지 못할 경우 군수·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도로구간의 설정 등) ①시장은 관할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영 제6조제5항과 제7조제3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의 부여·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또는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새주소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연장, 너비, 기점·종점 및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도로구간의 설정·변경,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예측성, 도로명주소의 영속성 등에 관한 사항 4. 도로구간의 설정과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군수·구청장의 의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심의 한 그 결과를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개별 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도로명 ----------)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 <단서삭제>
제5조(도로명주소의 홍보) 시장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5조(도로명주소의 홍보) -------- ---법---------- ---------- ---------- ----- 시민 등 ----------
제7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시장은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 제22조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2. ~ 3. (생략) 4. 시 단위의 도로명 주소안내도 제작보급 5. (생략)	제7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 ---------- ----- 1. ---------- ---------- ----------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등---------- ---- 2. ~ 3. (현행과 같음) 4.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25조 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2조의2제1항---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의 집행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의 설정·변경 및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3. 시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위원)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명사업과 관계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4. (생략)	제9조(위원회의 위원) ①---------- ---------- ------ 1. 도로명주소사업---------- ---- 2. 도로명주소사업 ---------- ---------- 3.·4. (현행과 같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 1차에 한하여 연임------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되고, 서기는 새주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간사 등)** ---------- ---------- -----도로명주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도로명주소------ ----------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등 심의		○
	3.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
	6. 기타 문제점		○

실·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09.11.13 ~ 12.2 ○ 내 용 - 의견수렴		"해 당 없 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 간 -'09.11.13~12.2 ○ 방 법 - 시보 및 인터넷 게재		"해 당 없 음"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 제8조(도로명부여 등) ○ 제17조(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 ○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제11조의2(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등의 설정 절차 등) “붙 임 참 조”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도로명주소법

제8조 (도로명부여 등)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2. 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
3. 도로명의 부여·변경·폐지
4.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5. 기초번호의 부여·변경·폐지
6.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7. 그 밖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장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도로구간의 설정 또는 변경
2.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
3. 기초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거나,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를 새롭게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거나 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시장등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만을 수렴한다)한 후 제22조의2에 따른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도로의 현황과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부여·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 ① 도로명의 부여·변경,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를, 시·도에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시·군·자치구에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

②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위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6.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도의 집행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3. 시·도의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2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등의 설정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현황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도로구간 설정의 경우: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2. 도로구간 변경의 경우: 변경 전·후의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3. 도로명 부여의 경우: 예비도로명 및 그 부여 사유
4. 도로명 변경의 경우: 변경 전·후의 도로명과 그 변경 사유, 변경 후 도로명의 부여 사유
5. 기초번호 부여의 경우: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6. 기초번호 변경의 경우: 변경 전·후의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② 시장 등으로부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이하 "인접 시·군·구"라 한다)의 시장 등(이하 "인접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에 대해 인접 시·군·구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한 시·군·구와 다른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접 시장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인접 시장 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
2.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3.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시장등과 인접 시장 등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받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에 관한 의견 제출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제출

⑧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시·도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시장등과 인접 시장등에게 통보하며,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